

주요 질의 응답 (FAQ)

- 1. 주택지원사업 제도 관련 문의**
- 2. 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기준 관련 문의**
- 3. 주택지원사업 제출서류 관련 문의**
- 4. 주택지원사업 사업접수 및 절차 관련 문의**
- 5.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및 자부담금 관련 문의**
- 6. 주택지원사업 설치 관련 문의**

1. 주택지원사업 제도 관련 문의

Q1

주택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Q2

주택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신청 자격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Q3

지원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 지원금액은 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 기준에 의해 산정하게 됩니다. 즉 태양광 용량 3kW를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19년 기준 보조금 지원단가는 83.8만원/kW이므로, 보조금은 251만원이(만단위 미만 절사) 산정됩니다.

* 예) 태양광 3kW : 83.8만원/kW × 3kW = 251.4만원 ≒ 251만원

* 예) 태양열 20m², 7.5MJ/m²·day이하 : 43.1만원/m² × 20m² = 862만원

* 예) 지열 17.5kW : 63.7만원/kW × 17.5kW = 1,114.75만원 ≒ 1114만원

* 예) 연료전지 1kW : 1,557.8만원/kW × 1kW = 1,557.8만원 ≒ 1557만원

- 지원금은 시공이 완료되면 공단 설치확인 담당자가 설치확인 후 참여기업으로 지급 됩니다.

Q4**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0년부터 주택지원사업 접수·사업선정 개편에 따라 상시 접수를 도입합니다.

진행내용	기 간
신청자-참여기업 계약 체결 및 서류제출 완료	4.13(월) ~ 9.4(금)
제출서류 검토	서류제출 후 14일 이내
자부담금 입금	사업선정 후 7일 이내

- * 홈페이지 접수가 가능 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 포함)까지 신청자는 반드시 자부담금을 예치하여야 함
 - 가상계좌 발급 이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 예치 시 사업은 취소

Q5**참여기업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시공자)에 따라 『주택지원사업 및 건물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평가·선정된 기업을 의미합니다.

Q6**참여기업이 아닌 태양광 시공기업이 설치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아닌 전문기업 또는 유사기업에 시공을 맡기실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해년도 참여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셔야 하며,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기업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 참여기업 리스트 확인 : 그린홈 접속(<http://greenhome.kemco.or.kr>)=> 참여 시공기업소개

Q7**신재생에너지설비는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요?**

- 신재생에너지원별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당해년도 지원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승인된 사업은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한

구분	설치완료기간
태양광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열, 태양광(BIPV)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Q8**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 주택지원사업, 건물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등

-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산업부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Q9**아파트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 아파트도 태양광 분야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용전기가 아닌 개별 가구용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단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주택 예시 : 아파트 101동 401호 한 세대에 단독으로 전기 사용

* 공동 주택 예시 : 아파트 101동 형광등, 엘리베이터 등 공용으로 전기 사용

*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구분	내용
1	공동주택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태양광설비(동당 30KW 이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전 센터와 협의 권고
2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입주자(예비 입주자) 자필 동의서(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3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물명으로 신청 후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4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 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당해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센터와 협의

Q10

설비가 고장나면 A/S는 어떻게 받나요?

- 시공한 참여기업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시공한 참여기업의 폐업한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의 고장접수 지원센터로 연락하시어 A/S접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고장접수지원센터 연락처 : 1544-0940
 - * 고장접수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ascenter.energy.or.kr/>

Q11

설비 설치 시 어떤 제품을 사용하나요?

- 주택지원사업으로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효율성 저하

및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여 설비를 설치할 경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제한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Q12

태양광 모듈, 인버터는 조달청으로 반드시 구매해서 설치해야하나요?

- 주택지원사업은 조달의무 구매제도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태양광 주요자재인 모듈, 인버터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해야 합니다. 미 준수 시 참여업체는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단, 공동주택의 10kW초과 인버터는 조달 구매 예외 대상입니다.

2. 주택지원사업 신청 및 지원기준 관련 문의

Q1

주택지원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죠?

- 신청자 주택에 필요한 용도에 따라 적합한 에너지원을 선택한 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신청자는 참여기업을 결정하고 사전 계약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 후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요청을 하고, 참여기업과 표준설치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표준설치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greenhome.kemco.or.kr>

Q2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은 가능 한가요?

-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주택지원 사업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주택의 소유권 분쟁, 일조권, 조망권 분쟁 등이 사유로 신청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Q6

목조주택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주택지원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목조주택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안전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였음을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확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Q7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이 가능한가요?

- 설치신청자가 2개 이상의 주택에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서류를 각각 증빙가능 하고, 주택의 소유주가 일치한다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8

외국인도 주택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양식은 일반 소비자와 동일하며, 첨부서류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Q8

작년에 사업포기 했는데, 올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년 주택지원 사업포기 후, 올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주택지원 사업승인(신청인 자부담금 입금) 후, 사업포기할 경우, 당해연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9

단독주택으로 신청해야하는데, 공동주택으로 신청했는데, 어떻게 하죠?

- 단독,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참여기업으로 공동주택으로 신청한 내역에 대해 사업취소 요청 후 단독주택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Q10

주택소유주가 미성년자인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 주택소유주라면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부모)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택소유주 및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의서가 필요 합니다.

Q11

실거주지와 설비 설치하려는 장소가 달라도 상관없나요?

- 실거주지와 설치하려는 장소가 달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지방비 수령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비 설치하려는 장소의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택지원사업 제출서류 관련 문의

Q1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어도 되나요?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며, 건물지원사업으로 접수하여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주택지원사업

*건축물대장 용도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외] → 건물지원사업

Q2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 표기되어 있는데 상관없나요?

- 위반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지자체 조례 등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건축물에 설치 후 적발 시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오래된 건물이라 건축물대장이 없는데,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을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 반드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또는 무허가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토지대장, 과세대장 등으로 건축물의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필히 건축물대장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Q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신청 서명(하단)과 신청인 서명(상단)이 반드시 일치해야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 신청 서명[하단]과 신청인 서명[상단]은 반드시 일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 서명[상단]은 표준설치계약서, 안내확인서 등 서류의 서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을 통해 발급

-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Q5

소유주가 부재중(해외출장, 군입대, 입원 등 사유)인데 서명대신 서류에 직인을 찍어도 되나요?

- 신청자가 부득의한 상황으로 본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표준설치계약서는 소유주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가족 중 한분이 대신하여 참여기업과 계약을 진행하며 필수 제출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 : 소유주 직인, 대리인 서명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함

Q6

소유주가 사망할 경우 가족이 신청해도 되나요?

- 주택 소유주 사망으로 인해 타인(가족 포함)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주택등기 이전 등 상속 완료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Q7

공동소유주인데, 공동명의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청자 및 공동소유자의 서명을 비교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8

표준설치계약서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나요?

- 담당자는 서류검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인 서명과 표준설치계약서 서명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합니다.

* 참여기업의 무분별한 서류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의 서명 일치 여부를 확인

Q9

공동주택은 설치계획서를 첨부해야하는데, 별도 양식이 있나요?

- 별도 양식은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1호 서식]을 참고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택지원사업 사업접수 및 절차 관련 문의

Q1

사업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죠?

- 그린홈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회원가입 후 참여시공기업 소개 메뉴에서 참여시공기업 선택 후 지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여시공기업 소개 메뉴에서 기업의 소재지 및 참여기업 선정년도 등 정보 확인이 가능하니 참여기업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신청자 정보를 잘못입력 했는데, 수정이 가능할까요?

- 신청자 정보를 잘못입력 했다면, 사업취소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정보는 참여기업으로 계약검토 시 정보를 입력하므로, 신청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Q3

사업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자께서 작성하신 신청서가 참여기업을 통해 공단으로 제출되면 서류 검토가 진행됩니다. 서류 검토가 완료된 후 신청자께서 자부담금을 가상계좌로 입금 시 자동으로 사업이 승인됩니다.

Q4

사업 진행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신청하신 사업의 진행상태는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

능하며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 → 신청년도 선택 후 검색 → 참여기업명 클릭)
해당 메뉴에서 계약요청 내용과 진행이력 등 확인이 가능하며 자부담금을 입금할 가상계좌 발급도 가능합니다.

Q5

그린홈 홈페이지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안돼요.

- 그린홈 홈페이지 좌측의 인터넷 환경설정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인터넷 환경을 설정하시고 이니텍 보안프로그램과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및 자부담금 관련 문의

Q1

에너지원별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작년에 비해 보조금이 상향되었습니다.

Q2

태양광 설치하는데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정부사업을 하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시, KS인증제품 및 일정효율 이상 제품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시공기준 준수 여부를 공단에서 현장 설치확인 시 확인하여 안정성 확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3년 이내 설비에 대한 연 1회 의무점검 실시, 3년 이상의 사후관리 의무화를 통해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부담으로 설치 시, 품질보증, 시공기준, 사후관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Q3

가상계좌로 예치하는 자부담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자부담금은 일시불로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부담금 가상계좌로 정확한 자부담금액을 예치하셔야 정상적으로 사업이 승인되며, 기한 내 미예치 시 해당사업은 취소처리 됩니다.

Q4

자부담금은 언제까지 입금해야 하나요?

- 자부담금 가상계좌 발급 후, 가상계좌 예치 만료일 (가상계좌 발급일로부터 7일, 공휴일포함) 입금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예치 시 해당 사업은 취소되며,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주택지원사업 설치 관련 문의

Q1

옥상에 설치공간이 부족한데, 마당에 설치해도 되나요?

- 토지 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주가 동일한 부분이 서류상 증빙이 된다면, 마당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시공기준 및 지자체별 조례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Q2

태양광 6kW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3kW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나머지 3kW는 자부담금으로 설치하셔야합니다.
- 다만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치 시, 공단 설치확인 등 시공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전기 및 기계적 설비를 구분하여 설치하길 바랍니다.

Q3

계약한 참여기업이 설치하는데 불만이 많아서 다른 참여기업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 주택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자와 참여기업과 계약 후, 신청하며 신청인의 일방적인 불만으로 인해 다른 참여기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더불어 신청인과 참여기업, 주변 이웃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으며, 민사상 분쟁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당 건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